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‘인증’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, “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제도”의 명칭을 ‘인증’에서 ‘지정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21561호, 2026. 4. 21. 공포, 2026. 10. 2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0000호, 2026. 0. 0. 공포, 2026. 10. 2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용어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 “(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)”을 “(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증”을 “지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증서”를 “지정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19조의2제6항”을 “영 제19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3의 제목 “(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)”을 “(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고용우수기업등인증”을 “고용우수기업등지정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제목 중 “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 (제6조의3 관련)”을 “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및 표지판 (제6조의3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고용우수기업등인증”을 “고용우수기업등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가목나목제2호 중 “고용우수기업등인증”을 “고용우수기업등지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“인증서”를 “지정서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1호 중 “인증번호:”를 “지정번호: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인증합니다”를 “지정

합니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개월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기업·기관명 ※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업 종	
	규 모 대기업[], 중소기업[], 공공기관[]			
	주소	본 사	(☎ -)	
		사업장	(☎ -)	
	담당 부서	부서명	직책	성명
		전화		팩스
전자우편		휴대전화		

현 황	자본금 (억 원)	근로자 수 (명)		주력분야	매출현황(최근 3년간)	
		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(무기계약직)	기간제근로자		연도	매출액(억 원)

각종 수상 및 지정 획득 현황	수상 및 지정 획득 내용		수상 및 지정 획득 일자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: 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붙임서류	1. 기업 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.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그 밖에 기업 등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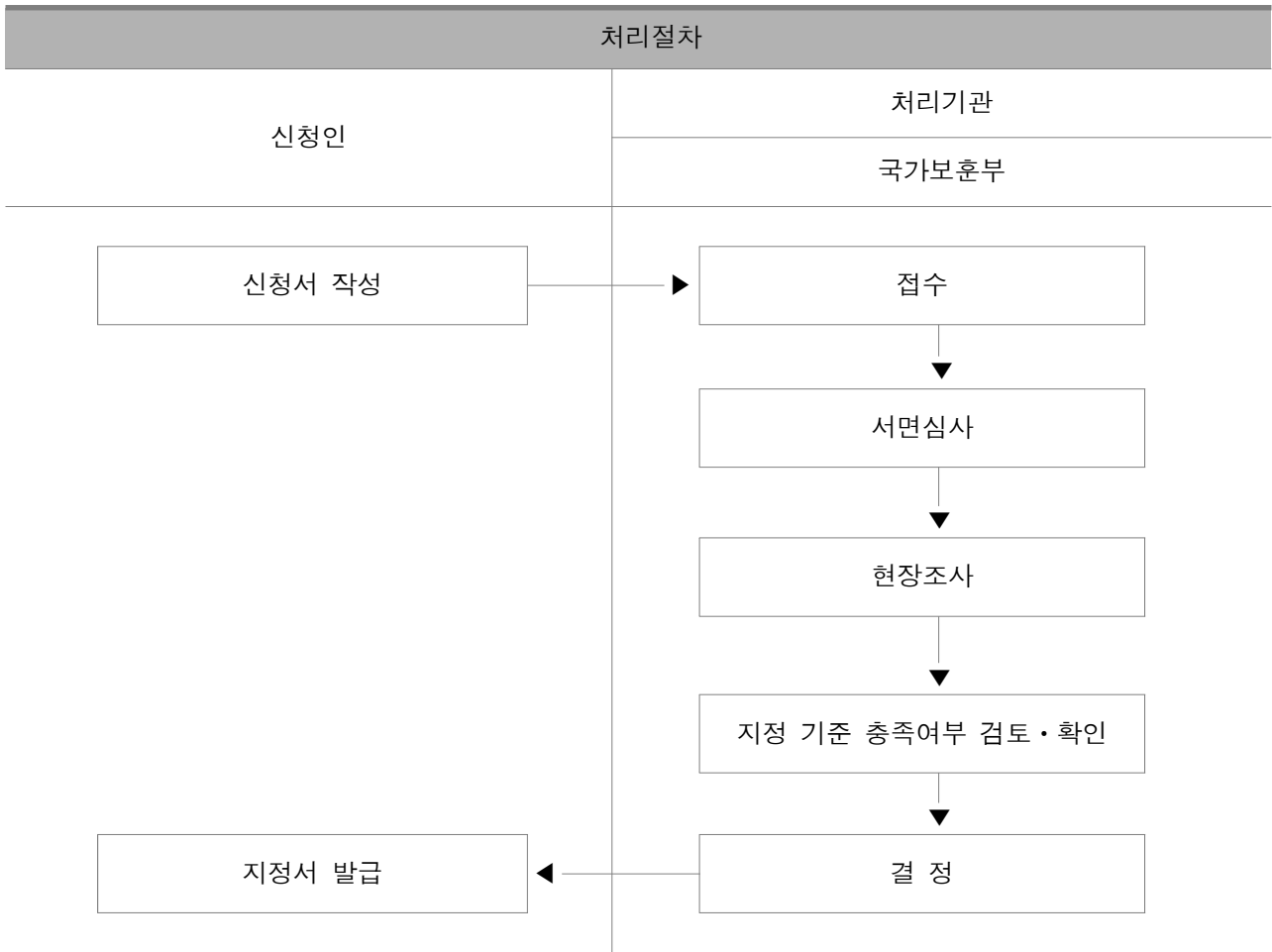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처리절차



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5일
신 청 인	기업명 (기관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화번호	
	소재지		
지정현황	지정번호	지정일자	
재발급 사유	☐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☐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☐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하는 경우		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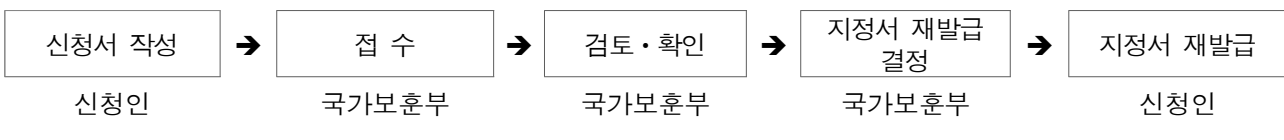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부장관 귀하

붙임서류	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※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를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<u>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</u>) ①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<u>인증</u>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.	제6조의2(<u>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</u>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 -----.
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<u>인증서</u> 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<u>지정서</u> ----- -----.
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.	③ 영 제19조의2제7항----- ----- -----.
제6조의3(<u>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</u>)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<u>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</u>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.	제6조의3(<u>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표시 등</u>) ----- ----- <u>고용우수기업등지정</u> ----- -----.